

공보 제3161호

화순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3년 5월 11일(목)

발행: 화순군 / 편집: 기획감사실 홍보팀

누리집: <http://www.hwasun.go.kr>

차 례

◆ 고 시

- | | |
|------------------|------------------------------|
| 화순군 고시 제2023-66호 |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화순군 고시 제2023-67호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

◆ 공 고

- | | |
|-------------------|-----------------------------|
| 화순군 공고 제2023-722호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직권폐차)및 권리행사 공고 |
|-------------------|-----------------------------|

화순군 고시 제2023 - 66호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2023. 5. 11.

화 순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480-6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화순 벽라리 주상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로 개설공사
3. 면적 및 규모(변경)

노 선 명	연장(m)	폭원(m)	면적(m ²)	비고
소로2-11호선	57	8	474	당초
소로2-11호선	57	8	475	변경

* 변경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조정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8, 8층(치평동 스카이랜드 8층)
 - 성 명 : 파라뷰스데이 외 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5. 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명세서 : 게재생략
7. 관련도서 : 게재생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도시과(☎379-3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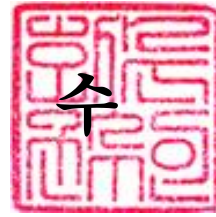
화순군 고시 제2023-67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10.

화 순 군 수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천암3길 11 외 1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부여(변경))	2건)		불		임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5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화순군 공고 제 2023 - 722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직권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관내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자진처리토록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자진처리되지 않아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 05. 09.

화 순 군 수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직권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3.05.09. ~ 2023.05.29. (20일간)
3. 공 고 대 상 : 붙임 참조
4. 공 고 내 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무단방치자동차 소유(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관내 무단방치자동차 보관 장소(건설기계주거장)에 견인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처리 또는 폐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소유(점유)자가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차량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후 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범칙금을 통고처분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 타 사 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061-379-378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